
Policy and Law Report _Vol.9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21 ~ 6.27) -

June 28,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법무부	• <u>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u>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자어음 이용을 더 늘려나가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단계적 확대 ②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판매 대금 조기 회수 및 어음할인 비용절감 유도(전자어음법 개정, '22년) ③ 전자어음의 배서횟수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전자어음법 개정, '23년) 등이 있음	2021-06-18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u>「6세대(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 수립</u>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세대(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세대(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6세대(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 최고 6세대 기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분야인 ①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② 국제표준·특허 선점, ③ 연구·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담겨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당장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저궤도 통신위성,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6대 중점 분야 10대 전략 기술에 '25년까지 총 2천억원, '21년 기준 총 179억원(12개 과제) 투자 ② 6세대 국제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TU) 6세대 비전그룹 작업 의장 및 3GPP RAN1(물리계층) 의장에 진출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표준화의 밑그림 격인 6세대 비전 정립단계부터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③ 튼튼한 연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21년 3개 대학 내 6세대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면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를 확대하여 실무인력의 6세대 역량 강화 촉진 등이 있음	2021-06-23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6세대(6G) 연구개발(R&D) 6대 분야 10대 과제 >							
	구분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신뢰
	중점 분야	최대 1Tbps급 전송속도	100~300 GHz 주파수도 활용 (1Tbps급 전 송속도 실현)	지원고도를 지상 10km로 확대 (저궤도위성을 통한 플라잉카, 드론 수용 등)	5G 대비 지연시간 을 1/10로 단축	네트워크(NW) 전 구간에 인공지능 적용 (코어망+무선 구간)		설계단계부터 보안기술 내 재화 (Embed- ded)
전략 과제	1. Tbps 무선통신 2. Tbps 광통신	3. THz RF 부품 4. THz 주파 수모델	5. 공간 이동통신 6. 공간 위성통신	7. 종단간 초정밀 네 트워크	8. 지능형 무선 액세스 9. 지능형 네트 워크	10. 6G 품질 상시보장·보 안 기술		
	•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제 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함. 주요 연구개발 규모는 ‘21년(22.5조원) 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규모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둠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총 4,881억원 투자 (전년대비 11.5% ↑) ②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총 2.48조원 투자 (전년대비 9.1% ↑) ③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뉴딜에 총 1.54조원 투자 (전년대비 44.8% ↑) ④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1.89조원 투자 (전년대비 20.9% ↑) ⑤ 양자·6세대(6G)·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역량 제고,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중점 투자 등이 있음						2021-06-24	
산업통상 자원부	•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12.22.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6.23.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금번 법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②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을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하여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 ③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④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 가능 등이 있음						2021-06-22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밑그림 공개 국가기술표준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제2차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150개의 탄소중립 표준화 아이템(안)을 발표함 주요 분야별 표준화 아이템(안)은 ① 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저장·전송에 필요한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 평가, 에너지저장장치(ESS)-계통연계 요건 및 연동운전, 분산형 발전의 직류 송배전 요구사항 등 45종 발굴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분과는 녹색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액체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가스 품질기준·평가방법, 이산화탄소(CO2) 연결관 수송시스템 등 34종 마련 ③ 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분과는 전기차 무선충전 요구사항, 급속충전기 형상·기능, 지능형(스마트)조명 요구사항, 건물 유형별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지침, 고성능 단열재 성능평가, 철강·플라스틱 등 재활용 물질의 품질평가 등 58종 도출 ④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 분과는 업계별로 상이했던 탄소중립 선언·이행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 규제가 예상되는 스마트폰·전기차배터리 등 품목별 탄소발자국 산출방법 등 13종 마련 등이 있음	2021-06-24
국토 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법 제83조제7호) ②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 (법 제97조) ③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법 제82조제1항) ④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법 제9조의3 제1항) 등이 있음	2021-06-22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는 6.30.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2020.12.29. 공포)을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의 제정을 완료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산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31.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법 § 5, 영 § 6) * ‘20년말 자산 · 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② (지정해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해제 (법 § 6) -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함 (영 § 7, 규정 § 6) ③ (내부통제 · 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 ·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법 § 9~12) * 내부통제기준: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 위험관리기준: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 평가 · 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 · 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④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법 § 14, 영 § 13, 규정 § 12)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함 ⑤ (위험자본 가산)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함 (영 § 13, 규정 § 12) 등이 있음 * 평가항목 (규정 § 12 <별표 4>) : ❶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❷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❸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 (규정 § 12 <별표 5>)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table><tr><th>등급</th><th colspan="3">1등급</th><th colspan="3">2등급</th><th colspan="3">3등급</th><th colspan="3">4등급</th><th colspan="3">5등급</th></tr><tr><td>소등급</td><td>+</td><td>0</td><td>-</td><td>+</td><td>0</td><td>-</td><td>+</td><td>0</td><td>-</td><td>+</td><td>0</td><td>-</td><td>+</td><td>0</td><td>-</td></tr><tr><td>(그룹위험)</td><td colspan="3">(거의 없음)</td><td colspan="3">(조금 있음)</td><td colspan="3">(부분적 존재)</td><td colspan="3">(다소 높음)</td><td colspan="3">(매우 높음)</td></tr><tr><td>가산비율 (%)</td><td>0</td><td>0</td><td>0</td><td>1.0</td><td>2.0</td><td>3.5</td><td>5.0</td><td>7.0</td><td>8.0</td><td>10.0</td><td>12.0</td><td>14.0</td><td>16.0</td><td>18.0</td><td>20.0</td></tr></table>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021-06-24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부처	내용	일시
	⑥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 공시)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 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❶소유 · 지배구조, ❷내부통제 · 위 험관리, ❸자본적정성, ❹내부거래 · 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 · 공시토 록 함 (법 § 15, 영 § 14 및 법 § 20, 영 § 15, 규정 § 15)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⑦ (위험관리실태평가)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 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 (법 § 21, 영 § 16, 규정 § 16) ⑧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❶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 만인 경우 또는 ❷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 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법 § 22~23, 영 § 17~1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방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68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6-22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에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한국가스공사가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로 공급한 석유 등의 양을 확인하여 한국석유공사가 부과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담하도록 수탁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2021-06-2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72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 이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첨단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정하고, 국내복귀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별로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율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06-2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가 인정되는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아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우선·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3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역·면역 관련 산업과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구체화하고 우선·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형 복귀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역·면역 관련 산업 구체화 (법 제2조의2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인정되는 업종으로 추가되는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으로 정함 ②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국내복귀 대상 구체화 (법 제3조의2 신설)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아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첨단기술·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활용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정함 ③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1조의5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공동 물류시설·기반시설 등의 설치·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복귀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기업 중 가장 먼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기업 또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도록 정함 ④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1조의6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이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력형 복귀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1-06-2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는 영업을 영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여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774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준수 사항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등록 대상에서 영업인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시 확인 사항 (제22조제4항) -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사항을 영업의 종류·방법 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충분한 출자능력 보유 여부, 조직·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의 적절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능력 등으로 정함 ②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준수 사항 (제22조의2 신설) - 경영건전성 유지 준수사항을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③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방법(제22조의3 신설) -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도록 함 ④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사항 및 변경인가 신청 절차 (제42조의4 신설) - 변경인가 사항을 시설계획, 주요 주주의 구성, 경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자산관리회사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변경인가 신청서에 상호, 본점의 소재지, 변경 내역 등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⑤ 자산관리회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 (제43조제3항 신설) -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경영건전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자본금의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으로 정함	2021-06-22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부	• 「<u>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 (안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2조의2) -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 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6/25(금)~8/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	2021-06-25
	• 「<u>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u>」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1.2.4)에 따라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단기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구조 및 형태를 유지하고,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제 대상 완화(안 제15조의2)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및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리모델링에 한하여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직통계단 및 계단실 출입구 등 설계보완을 통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2021-06-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24조의6)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6/25(금)~8/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자문·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시 동일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 제한 (안 제21조제5항 제7항, 안 제271조의2제5항 및 제8항) -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0조의2)됨에 따라, 등록이 직권말소된 본인, 대주주, 임원에 대하여 해당 직권말소된 금융투자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함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서 제공의무 관련 (안 제68조제5항)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교부의무가 도입(자본시장법 제249조의4)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요약설명서에 갈음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안 제87조제4항제1호·제8호의6·제8호의7)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함 ④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용어 정비 (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의3, 제8호의4) 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추가(안 제92조제3항)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추가함 ⑥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추가 (안 제242조제2항제5호)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6/23(수)~8/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	2021-06-2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 및 제39조의3제3항 신설, 제20조 등)	2021-06-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용후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40조 등)	2021-06-24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의3 신설)	2021-06-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0인)」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와 인가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에 서비스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2021-06-2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④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⑤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6조제5항)	2021-06-18
국토교통 위원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6인)」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신설)	2021-06-21
국토교통 위원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 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등)	2021-06-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u>」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2021-06-22
	• 「<u>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u>」 해체공사와 관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한해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함 (안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12호 신설 등)	2021-06-2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6/29(화)	제388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안건처리	
	7/1(목)	제388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안건처리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7/2(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5호 발간	
국회도서관	6/28(월)	「소셜시그널」 2021-6호 발행 - MZ세대 별별 재테크, “내 돈은 내가 지킨다”	
	6/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4호 발간 -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예산정책처	주중	「분위별 자산 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발간 - 우리나라의 자산과 소득분포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제시	
입법조사처	6/30(수) 07:30~	「제6회 NARS 시선과 논단」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와 희망 찾기	온라인 (zoom)
	6/30(수) 16:00	유럽의회조사처 온라인 정책세미나(Policy Hub) 참여 - 기후행동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대한민국 사례에서 배울 점	

[별첨1] 제388회국회(6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6/30(수) 10:00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
	7/1(수)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공청회
과방위	6/28(월) 16:00	안전조정위원회 회의	인앱결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문체위	6/29(화)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농해수위	6/28(월) 10:00	전체회의	법안상정 및 현안보고 등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산자위	6/28(월) 14:00	전체회의	법안 상정 및 의결 등
환노위	6/28(월)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29(화) 10:00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여가위	6/28(월) 10:00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28(월) 14:00	자문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6/30(수)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상정 등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8(월) 14:00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이학영, 민병덕, 배진교 의원실	은행회관 2층
6/28(월) 14:00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 대책은?	유동수 의원실	입법조사처
6/28(월) 14:00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진성준, 이동주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외	중소기업 중앙회 2층
6/29(화) 10:00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한국과학 기술회관
7/2(금) 10:00	조달시장, 적정가격 받기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7간 담회의실
7/2(금) 10:00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	이명수, 박완주 의원실, (사)한국갈등관리학회 외	온라인 ZOOM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1(월) 14:00	글로벌 전기차 입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양기대, 문정복, 임오경 의원실	여의도 이룸센터
6/23(수) 07:00	창간 21주년 상생과통일포럼 초청특강	설훈, 정진석 의원실, 상 생과통일포럼 외	글래드호텔 블룸홀
6/24(목) 10:00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안민석, 최강욱 의원실, 국회교육문화포럼	안민석TV 실시간
6/24(목) 16:00	국회물포럼 제14회 대토론회 :통합물관리 시대, 탄소중립 어떻게 해야하나?	변재일 의원실, (사)국회물포럼	온라인 ZOOM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